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725호

나. 발 의 자 : 아이수루 의원(찬성자 16명)

다. 발의일자 : 2025년 5월 25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2. 제안이유

- 체육진흥에 있어 국제 체육교류 구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부재한
상황으로 해외 지자체 및 우수선수 등 국제교류 사업과, 해외 우
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,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
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국제 체육교류 기반 구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18조의3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진흥법」, 「생활체육진흥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의 체육은 이미 국제적으로 올림픽, 세계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인정받고 있고, 태권도 등 스포츠 한류가 각광받고 있지만,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·물적 교류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국제 체육교류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음.

나.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 필요성

- 서울시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51개국의 78개 도시와 79건의 교류협력을 체결하였음.
-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세계 다양한 국가와 도시들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대외적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공공외교의 주체가 국가 중심구조에서 지방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함께하는 개방적 외교구조로 전환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.
- 서울시의 주요 교류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, 교통, 전자정부, 기후환경, 주택, 도시계획, 도시안전분야에 시 우수정책 공유·서울형 ODA·초청연수 프로그램·우수정책시설 견학 등이 있으나, 체육분야 관련 국제 교류사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.

- 스포츠의 경우 정치와는 분리되어 국제관계의 대결구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, 예로 제3차 북핵위기(2017년)가 고조되는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이 단일팀으로 참여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정책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.
- 스포츠분야에서는 태권도를 통해 스포츠 한류가 시작되었으며, 이후 종목별 세계무대에서 두각을 보이는 선수들이 나오면서 선수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했던 지도자들도 외국으로 진출하면서 스포츠 한류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고 판단됨.
- 이에 정부도 2023년 12월 20일 ‘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’을 통해 ‘국제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’을 핵심과제 설정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세부 과제로 ‘세계에서 사랑받는 K-스포츠 육성’과 ‘국제 스포츠 개발협력 체계화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.

<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세부 과제 >

□ 세계에서 사랑받는 K- 스포츠 육성

- (태권도·전통무예 확산) 현지 수요 맞춤형 태권도사업 지원*, 태권도 거버넌스 고도화(국내 단체 간의 협업체계 강화 등), 전통무예 브랜드화로 글로벌 확산 지원

□ 국제스포츠 개발협력 체계화

- (협력생태계 구축) 코이카(KOICA) 등 국제개발협력단체와 연계, 스포츠 개발협력 신규 프로그램 발굴 및 협력체계 형성
- (개발협력 분야 확대) 선수경기 중심의 현행 개발협력 분야를 스포츠시설, 유청소년, 스포츠 정책 분야 등으로 확대
- (일반 개발협력 확대) 개도국 초청 합동훈련 지도자 파견, 용품지원, 스포츠 행정가 교육 사업의 지속 확대 및 활성화

세부 과제의 추진 방향을 보면 동 개정조례안에서 실행하려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사업 추진에 있어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체육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민간과도 협력생태계를 이뤄 규모 있는 사업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- 그러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국제 체육교류 기반을 조성한다면, 서울시가 교류사업을 통해 대외적 위상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류사업만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도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(안 제18조의3)

< 관련 신.구조문 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<신설>	<u>제18조의3(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) 시장</u> <u>은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</u> <u>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u> <u>1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체육교류 사업</u> <u>2.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류 사업</u> <u>3.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사업</u> <u>4.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</u> <u>5. 그 밖에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

- 동 개정안은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의 체육인·국제 체육교류 민간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국제 체육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

으로 하고 있음.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제1항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지방체육회의 사업과 활동 중 하나로 ‘지역 체육대회 개최와 국내외 교류’라고 명시하고 있음.
- 또한 「국제문화교류 진흥법」에서 ‘국제문화교류’를 “문화, 예술, 관광,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(예술, 관광,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)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.”라고 명시하고 있음.

또한 같은 법 제3조¹⁾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.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7호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써 국제교류 협력을 명시하고 있고,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의 하나로 “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”을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관련 법령을 보았을 때 국제 교류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조례로 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, 체육분야에 대한 국제 교류 역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책무가 있으므로 체육분야의 국제교류 역시 조례로 제정 가능하다 판단됨.

1)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의안번호
2725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	
	아이수루 의원 (문화체육관광위원회)	2025. 5. 25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	
주요내용	〈제안이유〉 ○ 체육진흥에 있어 국제 체육교류 조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해외 지자체 및 우수선수 등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,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〈주요 입법 요지〉 ○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 (안 제18조의3) -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,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류,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,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등				
추진경과	○ 2025. 5. 25. 조례안 발의(발의자 : 아이수루 의원) - (찬성자) 김기덕, 김원중, 남창진, 유정희, 이종환, 임종국 의원 등 16명				
부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우수선수 등과의 국제교류와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, ○ 스포츠도시 서울의 위상강화를 통한 스포츠 외교력 향상과 스포츠관광 연계 및 선수·지도자 역량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				
대응방안	○ 해당없음				
상임위 처리결과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				
향후계획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				
담당부서	체육정책과	팀장	장중석(☎2133-2677)	담당	방준흠(☎2133-2678)